

○ 지역·성별 제한 : 없음

○ 최종합격자 발표일 현재 임용될 수 있는 자(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나. 임용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구분	임용자격 기준
교권전담 변호사 (교육행정 5급)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변호사법」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법률사무총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친 자 [우대사항]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또는 정부 부처 등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근무 경험자
산업보건 (교육행정 8급)	아래 자격요건 I 중 하나 이상과 자격요건 II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동시에 갖춘 사람 ◆ 자격요건 I ◆ 1. 「산업안전보건법」제143조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포함) ◆ 자격요건 II ◆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과] 산업보건학과, 산업안전보건학과, 산업안전위생학과, 산업환경보건학과, 산업위생관리학과, 산업보건간호학과 등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 관련 학과 ※ 상기 학과와 학과명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과 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관련 학부(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민간분야 등에서 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할 경력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최종 관련 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 기재**(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인정)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위 및 경력이 모호할 경우 서류심사 시 심사위원이 결정함**

직무기술서(교권전담 변호사)

임용예정 부서	임용예정 직급	채용인원	임기
전북교육인권센터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1명	임용일로부터 2년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률상담 및 현장 지원 ○ 교육활동 침해 사안 조사 및 소송 관련 업무 ○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관할청의 고발업무 ○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 구상권 행사 ○ 교육활동 보호 관련 자치 및 법규 등 제개정 지원 ○ 교육활동 보호 연수 지원(강사) ○ 기타 부서장이 정하는 업무 		
필요역량	<p>(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 지향마인드(공복의식)</p> <p>(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 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p> <p>(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p>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 법령의 해석, 검토 및 입법 기술 등에 대한 지식 ○ (법무) 행정법, 형법, 소송법, 교원지위법 등 법률에 관한 지식 ○ (사무능력) 보고서 작성, 상담 및 보고 능력, 행정 사무 처리 능력 ○ 교육(지방)자치 제도 및 법령 이해 		
응시 자격 요건	자격	<p>「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p> <p>※ 「변호사법」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친 자</p>	
	우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또는 정부 부처 등 공공기관 및 교육 기관 근무 경험자(면접시험일 기준으로 경력 산정) 	

직무기술서(산업보건 분야)

임용예정 부서	임용예정 직급	채용인원	임기
학교안전과	지방교육행정서기 (지방일반임기제)	1명	임용일로부터 2년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 ○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지원 등 ○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 건의 ○ 그밖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2조에 따른 업무 ○ 기타 기관 내 업무분장에 의한 관련 업무
-------------	--

필요역량	<p>(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p> <p>(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 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p> <p>(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p>
-------------	---

필요지식	○ 산업안전보건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	----------------------------

응시 자격 요 건	자격	<p>아래 자격요건 I 중 하나 이상과 자격요건 II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동시에 갖춘 사람</p> <p>◆ 자격요건 I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안전보건법」제143조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포함) <p>◆ 자격요건 II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과	<p>산업보건학과, 산업안전보건학과, 산업안전위생학과, 산업환경보건학과, 산업위생관리학과, 산업보건간호학과 등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 관련 학과</p> <p>※ 상기 학과와 학과명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과 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관련 학부(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p>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민간분야 등에서 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한 경력

5. 시험방법

가. 1차시험(서류전형) : 자격요건 등 심사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의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판단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직무적합성, 인성, 공직관, 업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방법 : 면접위원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아래와 같이 5개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제5항)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20점
 -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20점
 -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20점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20점
 -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20점
- 면접결과 공개 : 면접자가 요청한 경우 평가결과를 종합한 우수·보통·미흡의 개수 공개 (단, 평가요소별 우수·보통·미흡은 비공개 대상)

다.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 시험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험 성적 순에 따라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